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58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조규식·신혜영 의원

찬 성 자 : 정현서, 정홍근, 박용준, 서다운,  
최병순, 정인화, 신진미, 설재영  
(8인)

##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심사보조자 제도의 운영 기준, 위촉 절차, 자격요건 및 수당 지급 근거 등을 정비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방청 허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심사보조자 위촉 절차 명확화(안 제36조제2항)

- 심사보조자의 위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나. 심사보조자 자격요건 정비(안 제36조제3항)

- 폐지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의 인용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

다. 수당 지급 근거 정비(안 제36조제6항)

- 심사보조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청권 발행 권한 명확화(안 제46조제1항)

-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방청 허가 권한을 각각 의장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명확히 규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6. 3. 11. ~ 3. 16. (5일간)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03조 제1항”을 “제203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그 의결로 환경, 건설, 건축, 교통 등 해당 안전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심사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을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으로, “심사 보조자로 위촉·활용”을 “심사보조자로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을 “제1항에 따른 심사보조자의 위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이를 요청”을 “요청”으로, “대한 전문가의”를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로, “언어 의장에게 이를”을 “언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로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3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사보조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

2. 1일 지급 기준액은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

⑦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석배정) ① (생략)</p> <p>②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제36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u>그 의결로 환경, 건설, 건축, 교통 등 해당 안전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심사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u></p> <p>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 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u>이를 요청</u>하여야 하며, 해당 안전에 <u>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u> 다만, <u>위원장은 부득이한</u></p>	<p>제6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203조제1항 ----- ----- ----- ----- ----- ----- -----.</p> <p>제36조(전문가의 활용) ① ----- -- <u>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u> ----- ----- <u>심사보조자로 활용</u>----- ----.</p> <p>② <u>제1항에 따른 심사보조자의 위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u> ----- ----- <u>요청</u>----- ----- <u>대한</u> ----- ----- ----. ----- <u>부득이한 경우에는</u></p>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2. (생략)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단서 신설>

4. 5. (생략)

⑥ 심사보조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⑤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5. (현행과 같음)

⑥ 심사보조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

2. 1일 지급 기준액은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

⑦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6조(방청) ①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68조(방청 신청 절차)** ① 방청 신청은 신청인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 1호서식의 방청신청서를 작성·제출(직접방문, 팩스) 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 시에는 방청 당일 방청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방청권의 교부)** ① 본회의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위원회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